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110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5.

판결 선고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
가.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.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(가) 부분 459.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
62.81㎡를 각 인도하고,
나. 60,850,849원 및 2023. 11. 18.부터 위 가항 기재(가), (나)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
4,0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- 1) 주문과 같다.

이 유

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, 피고가 2013. 11. 17.까지 60,850,849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, 그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바,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2.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459.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62.81㎡를 각 인도하고, 60,850,849원 및 2023. 11. 18.부터 위 (가), (나)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,0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동현

별지

1) 원고는 2024. 8. 28. 답변서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.